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1가단529129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한영주

피고1. 주식회사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지성

변론 종결2023. 3. 28.

판결 선고2023. 5. 1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8.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8.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11.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전환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자: 원고, 발행사: 피고 회사

제1조 사채의 발행과 인수

(1)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본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본 계약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① 회사의 상호: 피고 회사

② 본건 전환사채의 명칭: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③ 본건 전환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전환사채

④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 총액: 110,000,000원

⑤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 금액 및 권종수: 1억 원 권 1장, 1천만 원 권 1장

⑥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⑦ 본건 전환사채의 이율: 표면이율 연 1.0%, 만기보장수익률 5%

⑧ 본건 전환사채의 납입기일: 2018. 11. 28.

⑨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2021. 11. 28.

⑩ 투자자의 본건 전환사채 인수금액

원고	110,000,000원	1억 원 권 1장, 1천만 원 권 1장
합계	110,000,000원	1억 원 권 1장, 1천만 원 권 1장

(2) 회사는 납입기일 익일까지 전환사채를 발행(실물발행하지 않을 경우, 주권미발행확인서로 대체)하고 전환사채의 상업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진술과 보장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 완결일까지 본 계약서를 위한 진술과 보장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6조 사채상환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원금 및 이자지급을 다음 각 항과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

(1) 상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2) 이자지급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매 6개월마다 "본사채" 권면금액의 1.0%에 1/2로 산정된 매 6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제9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1)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운영 및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본 계약 이후 언제든지 투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위 1항의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같은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회사가 투자대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회사는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약벌 등

(1) 투자자는 회사가 본 계약서의 진술과 보장, 약정사항, 기타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총 사채인수대금의 20%를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위약벌 청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지급될 때까지 지체된 금액에 관하여 연 복리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한이익 상실 및 계약의 종료

(1) 본건 거래완료 후 회사는 아래의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① 본건 전환사채 원금 또는 이자지급이 그 지급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② 제3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 ③ 투자금을 사용용도에서 규정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④ 회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⑤ 회사가 거래완료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이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본건 거래완료 후 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투자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투자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전환청구를 하여 주식을 인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 조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 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투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청구

(1) 전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하거나, 전조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거래완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본 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본 계약 다른 조항에서 정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손해배상의무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한다.

2) 피고 회사는 2018. 11.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환사채인수대금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자 및 상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상법 제401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전환사채인수대금을 베트남 수산물 사업에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대금을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환사채권 등기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 C의 주장대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형식상·명목상 이사이고 D가 실질적인 대표자라면 피고 C은 그 자체로 대표자로서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C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전환사채인수대금을 베트남 수산물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D 등과 공모하여 위 대금을 베트남 수산물 사업에만 사용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전환사채인수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상법 제401조 제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 피고 C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전환사채인수대금을 베트남 수산물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D와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전환사채인수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35조 제1항 및 제760조에 따라 D,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1) 상법 제401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투자자인 원고로부터 받은 자금을 "운영 및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그 구체적인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한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갑 제3, 6, 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전환사채인수대금의 사용 용도를 베트남 수산물 사업에 한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전환사채인수대금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운영 및 투자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통상의 거래행위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가 전환사채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것,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이자 및 상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대표자로서 어떠한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형식상·명목상 대표자이고, D가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 C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소정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형식상·명목상 대표자인 피고 C의 포괄적인 승낙 내지 위임 하에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D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D의 어떠한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은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한편,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전환사채인수대금을 베트남 수산물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D와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전환사채인수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피고 C이 D와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전환사채인수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구자광

별지